

- (겸직 가능 여부)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(비)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
 - 단, 겸직 업체·활동 성격에 따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* 등은 엄격히 심사하여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겸직 제한
 - * 대학 입시 관련 실기학원, 대학 편입 학원 등
- ※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나, 금지 대상 겸직활동, 복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활동 가능

예시 1 교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제작 등 활동을 하는 경우

- ▶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, 계속성,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, 사교육 유발 영향(입사편입 학원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능함

예시 2 교원이 입시(실기학원) 또는 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

- ▶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, 사교육 유발요인,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,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함

②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

- (범위) 공공기관(교육과정평가원 등), EBS, 대학,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,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
 - (업무) 강의, 컨설팅, 교재 저술/감수, 문항 출제 등
 - (겸직 가능 여부) 복무규정 제25조 금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속성 있는 (비)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
 - ※ 계속성이 없는 업무는 겸직 신청 대상은 아니며,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 가능
- 학원과 무관한 기관 및 업체더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콘텐츠(문항, 특강 등)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한

예시 1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,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

- ▶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되며, 공무에 부당한 영향 또는 직무 능률 저하 등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이 가능함

□ 겸직 허가 절차

- (허가권자) 소속기관의 장(학교(원)장 등)
- (겸직 허가 신청)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(직위) 상세 자료(〈붙임2〉 서식 활용: 겸직 유형, 수익발생 내역, 사교육업체 연계여부 등 포함) 제출
- (겸직 허가 심사)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, 사교육업체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겸직심사위원회 필수 심의
 - (신청자료 검토) 신청자료를 토대로 업무 내용과 성격·수익·담당직무와의 관련성과 관련 증빙 등을 검토
 - ※ 〈서식 IV-17〉 서식의 겸직 심사 주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심사
 - ※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학원, 교습소 등 정보 확인 가능
- (겸직심사위 의무화) 사교육업체 관련 활동은 겸직 목적의 공익성, 겸직 업무의 공개성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해 겸직심사위원회를 필수 운영